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900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서영교·임미애·박희승  
남인순·한민수·민병덕  
이성윤·김용민·안태준  
이주희·송재봉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위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br>(생 략)<br><u>&lt;신 설&gt;</u> |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br>(현행과 같음)<br><u>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
| <u>④</u> (생 략)                                    |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